

#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

## 1. 기능과 성격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'헌법기관'입니다.

### <헌법 제92조>

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'통일기구'입니다.
  -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.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및 전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참여하고 있는 '범민족적 기구'입니다.
  - 2019년 6월 현재 국내 16,080명, 해외 3,630명(122개국 거주) 등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구체적 기능은 △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, △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, △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, △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.(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조)

## 2. 주요조직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
  - △운영위원회, △상임위원회, △분과위원회 등 회의기구와
  - 국내외 각 지역별로 △지역회의, △협의회, △지회 등의 조직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해외는 5개 지역회의, 43개 협의회, 33개 지회 등 총 81개 단위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.(제18기 기준)
  - '지역회의'는 대륙별·국가별, 소속 협의회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, '부의장'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
  - '협의회'는 재외동포 수, 자문위원 활동 거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, '협의회장' 책임 하에 운영됩니다.
  - '지회'는 협의회에 소속되고, 국가 혹은 도시(지역)별 자문위원 수 등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설치하며, '지회장'의 책임 하에 운영됩니다.
- ※ 협의회는 자문위원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, 자문위원들은 거주지역 협의회 등에 소속되며, 주로 협의회를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,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

### 3. 자문위원의 신분과 역할

-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통일의지를 대변하고 활동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.
  - 지역(국가), 연령, 성별, 직능 등 요소를 고려하여,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위촉합니다.
  -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공관장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위촉합니다.
  
-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습니다.
  - 제19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9. 9. 1부터 2021. 8. 31까지입니다.
  
- 자문위원은 통일정책(한반도정책)에 대해 국민과 동포사회 및 현지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, 통일관련 다양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합니다.
  - 특히, 해외자문위원에게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거주국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'통일공공외교 활동'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
  
- 자문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서,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.
  -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
  
-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은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과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4. 사무처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사무처에는 사무처장(정무직, 차관급)을 비롯한 76명의 국가공무원과 250여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
- 해외 자문위원 및 조직의 활동 지원은 해외지역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, 자문위원 및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(www.nuac.go.kr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<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체계(제18기 기준)>

